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도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14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29.

발의자 : 최도자 · 김광수 · 정인화
전혜숙 · 윤영일 · 강창일
주승용 · 박명재 · 김중로
이용주 · 김해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.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·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,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

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2조).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 중 “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 또는 유출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1.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 또는 유출한 자
2. 제28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같은 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금융정보를 사용·제공·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2조(별 칙) ① <u>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 또는 유출한</u>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2조(별 칙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·멸실·변경·위조 또는 유출한</u> 자</p> <p>2. <u>제28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정보를 사용·제공·누설한</u>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<u>② 제28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같은</u></p>	

<p><u>조 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정보</u> <u>를 사용·제공·누설한 자 및 그</u> <u>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</u> <u>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</u> <u>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</u> <u>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</u> <u>금에 처한다.</u>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• 2. (생 략)</p>	<p>③ ----- ----- -----<u>3천만원</u> -----.</p> <p>1. • 2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